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 규제 범위

- 양록산물 광고시 각별한 주의 요망 -

허위 · 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농림부는 '2002 축산물위생감시지침' 중 기타 축산물의 위생관리지침에서 허위 · 과대광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관련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고 위반시에는 신속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검역원(지원)과 시 · 도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 신문, 방송, 잡지, 생활정보지, 인쇄물 등에 대한 광고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광고 내용으로는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용어 사용 등 아래와 같다. 특히 복용, 용량, 용법, 한방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 녹용 및 건강보조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양록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편집자 주〉

1.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시행규칙 제52조)

1. 영업의 허가 신고사항 또는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3.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 · 영양학 · 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 광고(다만, 축산가공학 · 영양학 · 수의공중보건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

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다만, 법령에 의하여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 제휴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

1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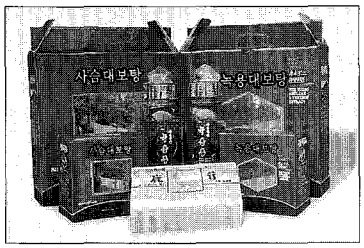

▲ 건강보조식품 광고 중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2.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별표 14)

1. 적용대상축산물 : 식육추출가공품

2. 표시(가공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유용성

(1)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

·표현가능 : 건강유지·건강증진·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

·표현불가 : 당뇨병·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 작용에 대한 표현

- 비타민·칼슘 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 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

- 유아식·환자식 등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기에 좋다 등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3. 허위·과대표시 및 광고에 대한 감시의 착안사항

가.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여부(품목제조보고시의 제품명 허위과대표시 확인)

예 : 제품명, 업소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임의로 변경

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①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

예 :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암 등의 예방 및 치료, 대장, 위장, 간장, 신장장애 등의 치료 개선

② 신체조직기능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효능·효과

예 : 자양강장(특소세법에서 허용된 것 제외), 노화치료, 회춘, 정력증진, 혈액순환, 자연치유능력 등

③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의 암시

- 명칭 또는 캐치프레이즈로 암시

예 : 불로장수, 한방비법, 신비의 약, 생명의 민간약 등

- 함유성분의 표시 및 설명으로 암시

예 : 간장해독, 소화치료제로 알려진 ○○원료를 사용하고 유용성분을 첨가하여 상승효과를 나타냄 등

- 제법의 설명으로 암시

예 : 지리산 심산계곡에서 자생하는 ○○을 주원료로 xx, yy 등의 약초를 독특한 제조법으로 제제 등

- 기원, 유래 등의 설명으로 암시

예 : 옛날부터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상어로부터 추출한 간유를 허약체질, 상처치유목적, 위장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복용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사용 등

- 신문, 잡지 등의 기사나 의사, 학자 등의 담화, 학설, 경험담 등을 인용 또는 기재함으로써 암시

예 : 의학박사 ○○○의 말씀「○○제

품을 복용하면 백혈병, 암 등에 걸리지 않으며,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등

- 「건강체크」등으로 신체상태나 증상 등을 체크해 각각의 증상에 따라 섭취를 권장 또는 암시

예 : 당신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건강수준 등

- 「○○○의 분에게」등의 표현으로 암시 질병이 있는 사람,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예 : 병이 걱정되는 사람에게,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등

- 「호전반응」이란 표현으로 암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음에도 제품 섭취시 발생하는 소화장애, 소화이상 등을 체질개선, 체내정화라는 명현반응 또는 호전반응으로 설명하여 섭취를 권장

- 「효능」「효과」등의 표현으로 암시
질병명 등의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특정제품의 섭취에 따라 「효능」「효과」 또는 「효능·효과」등의 표현

예 : ○○제품은 1개월 이상 계속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그 효과가 인정된...

다.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여부

- 제품에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소량 함유된 것을 함유되었거나 많이 함유한 것으로 표시광고

라.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허위표시·광고

- 제조업체나 중간 또는 최종판매자 등에 의한 변조여부

마.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여부

- 연구문헌을 이용하여 문헌내용과 연구자의 성명 등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 것은 제조방법에 국한되며, 축산물의 성분·효능 등의 경우에는 인용이 불가함

바. 각종의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여부

- 특히, 체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 또는 종교관련서적, 잡지 등 인쇄매체를 소비자에게 제공 또는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사.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의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여부

- 외국제품이 아니거나 외국과 기술제휴한 당해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유사하게 표현하여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하는 행위

- 외국산임에도 국산으로 혼동할 우려

가 있게 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아.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는 한국인의 장에서 추출하여 배양시킨 유산균을 사용하여 외국유산균주를 사용한 제품과는 달리 발효성식품의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입니다.

- 우리는 고름우유를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자.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여부("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포함)

- 부적정한 표현문구

· 최고, 최상, 최첨단, 최대, 최초, 유일, 제일, 절대적, 이상작, 가장 좋은

· 고기능, 고품질, 고단위,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 뛰어난, 탁월한, 독특한, 특별히, 각광, 강력한, 특수한, 완전한

· 순수, 천연, 자연, 무공해, 신비, 미지의

· 질병, 질환, 성인병

· 알칼리성 체질개선, 산성체질개선, 치료, 강장 · 강장효과

· 불로장수, 장수식품, 불로초

· FDA허가, FDA허가제품, FDA실험실 승인, 일본후생성 승인

· 호정반응, 명현반응, 자연치유반응

- 모호한 단어의 수정표시

· 효능, 효과, 약효 → 유용성

· 복용 → 섭취

· 용량 → 섭취량

· 용법 → 섭취방법

· 생약, 한방원료 → 동 · 식물성원료

· 한방 → 민간

차.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 여부

- 나체, 반나체 등 음란표현 등

카.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여부

- 글루타민산나트륨의 경우 당밀, 전분 등을 발효시켜 생산한 제품

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여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제외

4. 표시에 대한 감시의 착안사항

가. 표시적용대상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②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가공품

③ ① 및 ②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가공품

④ 자연상태의 수입축산물로서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나. 표시사항

①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허가기관 및 허가번호, 업소명, 업소소재지,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내용량 또는 중량,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대상 축산물에 한함), 표시대상 첨가물, 기타 축산물별 표시기준에서 규정된 표시사항

② 기타 축산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

다. 표시금지사항

①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사항(별첨3 및 5 참조)

②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허위표시)

라. 표시사항별 착안사항

① 제품명

- 품목제조보고(수입신고)한 명칭여부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여부
- 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여부
- 특정성분 등을 사용한 경우 적정(성분명 및 함량표시등) 여부

②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의 유형구분에 적정하게 표시여부

③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허가번호

- 가공업소·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영업허가(신고)기관명과 영업허가(신고)번호 적정표시여부

④ 업소명 및 소재지

- 가공업소명과 가공업소의 소재지 표시여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경우 가공업소와 함께 당해업소명 및 소재지 병행표시여부

⑤ 제조 년·월·일

- "○○년 ○○월 ○○일", "○○. ○○. ○○."등 표시 적정여부
- 일괄표시가 곤란한 제품(자동포장표시 등)의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 명시여부
- 통조림제품은 연의 표시 끝숫자만을, 10월, 11월, 12월은 O,N,D로 표시 가능

⑥ 유통기한

- "○○년 ○○월 ○○일", "○○. ○○. ○○까지", "○○월 ○○일까지" 등 표시적정여부
- 일괄표시가 곤란한 제품의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 명시여부
- 제조일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 적정여부
- 자동화표시로 "○○월 ○○일 ○○

시까지"로 표시 가능

-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였는지 여부("냉동보관", "냉장보관" 및 보존온도 표시)

- 유통기한이 상이한 여러 제품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가장 짧은 유통기한 표시여부

※ 축산물의 날짜표시 설명

- 제조일 : 축산물이 일정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날짜를 말한다.

- 포장일 : 최종적으로 그 안에 담긴 채로 판매될 적정용기에 축산물을 넣은 날짜를 말한다.

- 판매기한, 유통기한 :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최종일자를 말하는데, 그 후에도 합리적인(통상적으로 포장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동안 가정에서 저장할 수 있다.

- 최소보존일 : 일정한 저장조건하에서 완전하게 판매가능하고, 암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주장된 특수한 성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물을 보존할 수 있는 최종일자를 말한다. 그러나 이 날짜 이후에도 그 축산물은 여전히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

- 사용기한 : 일정한 저장조건하에서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기대하는 성질이 보존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최종일자를 말한다. 이날 이후 그 축산물은 판매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⑦ 내용량

- 표시된 내용량과 실 내용량의 적정여부

· 가공 또는 판매업소 등에 저울 등 계량기가 있을 경우 측정하여 허용오차를 범위보다 부족된 경우 수거하여 정밀검사

-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인 경우 중량으로 표시

- 내용물이 액체인 경우 용량으로 표시

-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

- 개수로 표시할 때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

- 통상적으로 섭취전에 버리게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축산물의 중량을 표시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

-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그 함량은 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

- 합성착색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등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축산물은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식품위생법의 첨가물명칭 표시기준에 따른다)

- 축산물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할 때

에는 제품 중에 함유하는 총고형분의 백분율을 함께 표시

⑨ 영양성분

- 표시대상

· 영양성분을 표시하고자 하는 축산물

·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당해 축산물 중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거나 같은 유형의 다른 제품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축산물)

-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 영양성분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유통기한 날짜까지)에서의 100g당, 100ml당, 1인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은 그 명칭과 함량을 반드시 표시

·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질, 당류, 지방산류 또는 콜레스테롤은 그 「명칭 및 함량」을 동시에 임의 표시 가능

· 「저, 무, 고, 함유」등의 용어표시는 함량강조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표시가능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 참조

· 「덜, 더, 감소, 라이트, 강화, 첨가」등의 용어는 표시기준에 적정하게 표시여부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 참조

· 기타 영양성분의 세부표시방법의 적정여부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 참조

⑩ 기타 표시사항

- 회수하는 병을 사용하는 제품의 공병보증금환불에 관한 사항 표시여부

- 조사처리제품

· 조사처리업소명, 전화번호, 영업허가번호, 조사년월일, 조사선량, 조사처리된 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및 조사도안의 적정 표시 여부

- 육류 등 냉동제품은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안내표시 여부

- 우유 등 개봉후 변질되기 쉬운 제품은 「개봉후 냉장보관 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안내표시 여부

- 통조림제품 및 냉동제품의 유형, 종류 및 보존 · 주의사항 등 표시 적정여부

- 해당제품별 "살균제품", "멸균제품" 표시여부

- 기타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 위반여부 한국양록